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현우 의원 발의】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5호로 2023년 10월 10일 박현우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아동과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문화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아동·청소년이 미래를 선도할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과학인재 양성사업 및 과학문화 확산사업(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발급 및 신청과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 마. 이용권 발급대상 관리 및 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 바.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10. 13. ~ 10. 17.)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아동·청소년의 과학문화이용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관내 아동·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지원)**에서 과학육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6조(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에서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함)에 대해 정의함.
- **안 제7조(이용권의 발급)**는 이용권 발급대상자를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돼 있으면서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7세 이상 15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규정함.
- **안 제10조(이용권 발급대장 관리)**는 이용권 발급대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 **안 제11조(전산시스템의 운영)**는 이용권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 결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학적 소양 중심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는 과학 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영등포구만이 과학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영등포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과학교육특별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과천과학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미래 창의융합 인재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본 조례안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으로서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해 과학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사회보장 제도로써,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상황임.
-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으나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전시·도서·키트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본 안건에서 신설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은 관내에

- 거주하는 초등학생·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공립 과학관 등에서 운영하는 과학 프로그램 이용 등 경험적 서비스를 체험하는 상품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과학관이나 전시관 같은 과학교육 관련 기관이 전무하여 관내 학생들이 과학문화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체험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험적 서비스 체험 상품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7조에서 이용권 발급 대상자의 요건이 초등학생·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연령 내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여 이들이 향후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